

예결산위원회 운영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 예산·회계규정 제4조의1에 규정한 예결산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예산편성(본 예산, 추가경정예산)에 관한 사항
2.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그 밖의 예산, 결산에 관련된 중요 사항

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, 총무처장, 교무처장, 신학대학원장, 기획과장, 경리과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예산편성 관련 회의시에는 기획처장이 되며, 결산 관련 회의시에는 총무처장이 된다.

③ 간사는 기획처 예산담당이 된다.

제4조 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소집 및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.

제6조 (심의 및 시행)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은 투표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.

제7조 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, 위원장이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 (주관부서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기획처에서 담당한다.

제9조 (협조요구권)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 또는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를 요구할 수 있다.

1. 업무 현황보고 및 관련자료의 제출
2. 관계 부서장 또는 관계자에 대한 위원회 회의 출석 및 의견 개진

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0조 (비밀유지)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예결산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에 의한다.